

국 민 안 전 처

주 의 요 구

제 목 ○○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사용 부적정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창원시

내 용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9조에 따르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및 시장·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

같은 법 제19조의6은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이에 근거하여 창원시 ○○○○과에서는 국민안전처로부터 [표 1]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○○지구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였다.

[표 1] ○○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황

사업기간	사업비(백만원)			주요사업 내용	도급자	비고
	계	국비	지방비			
2014.4.17.~ 2015.12.21.	16,934	8,467	8,467	- 우수저류조 설치 : 36,000톤	○○○○○○(주) ○○○	

* 자료 : 창원시 제출자료 재구성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

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

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(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, 2015. 1. 22. 시행)」에 따르면, 시설부대비 사용 용도는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,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그러나, 창원시 ○○○○과에서는 ○○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토목(2015. 12. 21.일) 및 전기공사(2015. 12. 23.일)가 준공됨에 따라, 준공된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제반 운영비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

2016. 1월부터 2016. 10월 까지 ○○지구 우수저류시설 운영에서 발생한 전기료,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등 총 20,896천원을 국고보조금 시설부대비(401-03)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창원시장은

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우수저류시설의 운영비를 국고보조금에서 사용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